<심사기준 2020.1.1 시행 제4부 2.2>

본호(법 제33조제1항제3호와 제5호를 포함한다)는 특수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과 결합하여 상표 전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식별력 있는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 전체의 구성상 보통명칭 등의 보조적·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가 직관적으로보통명칭 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경우『보조적·부수적』이라 함은 단순히 보통명칭 등의 부분 이외의 구성요소가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크기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수요자에게 핵심적요소로 인식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상표 전체의 구성상 도형 등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이 보통명칭 등의 부분을 압도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